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
재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7354('22.02.27.)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8952('22.03.08.)

2. 기 안내한 바 있는 **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**을 다음과 같이 재 안내하오니 다음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극 안내 및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사항
 -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 붙임 자료 참고

구 분		현행	변경
확진자 동거인	관리 대상 구분 기준	?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	?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*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
	관리 방식	?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, 격리 통지, 격리면제 안내, 진단 검사 시행	?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, 진단검사 지원 ?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준수
	검사 기준	? 2회 PCR(분류 직후, 6~7일차) 시행	? 1회 PCR(3일 이내) 및 1회 신속항원검사(6~7일차) 권고 *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
격리통지 방법		?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, SNS 등을 통해 전송 ?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	?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, SNS 등을 통해 전송 ?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
- 타 시군구로부터 이관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관받은 확진자에 대해 조사 및 안내 등 관련 업무를 매일 확인 및 적시에 조치
-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 관련 "문자 발송 시 격리기간 반드시 명시"

붙임 1.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.
2.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강진아

행정사무관

김은미

학생건강정책
과장

전결 2022.3.11.

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2129 ((2022.3.11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962 전송 044-203-6438 / jinariver@korea.kr / 공개